

일본의 사회보험과 관리운영체제

1998. 12.

이 해 영

(수원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目 次

I. 머리말	1
II. 社會保險의 構造	2
1. 종 류	2
2. 社會보험의 管理체계	3
III. 社會保險의 內容과 管理體系	10
1. 의료보험제도	10
2. 공적연금제도	15
3. 노동자재해보상보험제도(노재보험)	23
4. 고용보험제도	25
IV. 社會保險의 改革動向	32
1. 행정개혁과 「노동복지성」	32
2. 재정구조 개혁과 社會보장	33
3. 社會보장의 구조개혁	34
〈參考文獻〉	38

表目次

〈표 1〉 사회보험의 종류와 보험사고	2
〈표 2〉 대상별로 본 사회보험의 종류	2
〈표 3〉 사회보험의 종류와 행정기구(1997년 4월 1일 현재)	7
〈표 4〉 각 사회보험의 관할 및 창구	8
〈표 5〉 의료보험제도의 종류	10
〈표 6〉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16
〈표 7〉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1997년)	16
〈표 8〉 1986년 공적연금제도의 대개편	17
〈표 9〉 보험료부담 비율	26
〈표 10〉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의 절차	29
〈표 11〉 노동보험사무의 관할구분	30
〈표 12〉 노동보험 행정의 사무분담	31

I.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관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단계적 통합방안으로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우선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각 사회보험제도가 제도 도입시에 많이 참고해 왔고, 따라서 비슷한 사회보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의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의 현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모색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1961년 階연금 階보험 체계로 크게 발전하게 되는 일본의 사회보험제도는 각 제도가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성립되고, 피용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 적용되어짐에 따라 각 제도가 독립된 법에 의해 병립하는 복잡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은 일찍이 인식되었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련의 제도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후생성의 사회보험청에서 사회보험사무소와의 온라인 체계를 완성하여 양 보험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성에서 관장하는 고용보험과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경우도 「징수법」을 제정하여 양 보험의 징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경제·사회 분야의 대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성과 후생성의 통합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의 징수체계의 일원화 등이 개혁의 일환으로 모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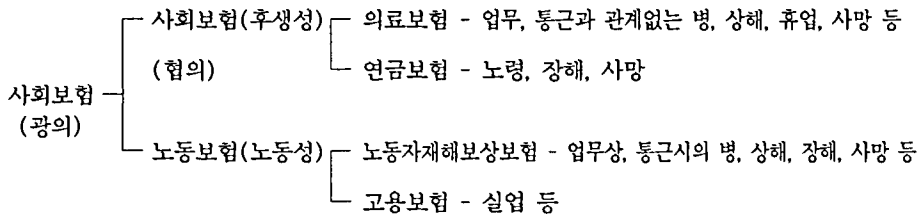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일본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사회보험의 개혁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社會保險의 構造

1. 種 類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일본의 사회보험은 크게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노재보험)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협의의 사회보험으로 후생성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노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보험으로서 노동성에서 관할하고 있다.

〈표 1〉 사회보험의 종류와 보험사고



일본의 사회보험은 역사적인 발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각 법이 성립됨에 따라 현재 대상별로 각기 다른 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있는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종류별로 보면 12종류의 사회보험이 대상별로 〈표 2〉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

〈표 2〉 대상별로 본 사회보험의 종류

- | | |
|----------|----------------------------------------------------------|
| 1) 일반근로자 | ① 건강보험,
② 후생연금보험(국민연금)
③ 노동자재해보상보험(노재보험)
④ 고용보험 |
|----------|----------------------------------------------------------|

- 2) 日雇노동자
 - ① 건강보험(일고특례피보험자)
 - ② 국민연금
 - ③ 노재보험
 - ④ 고용보험(일고노동피보험자)

- 3) 선원
 - ① 선원보험
 - ② 후생연금보험(국민연금)

- 4) 공무원, 교직원 등
 - ① 국가공무원등공제조합
 - ② 지방공무원등공제조합
 - ③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 ④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
 - ⑤ 국민연금

- 5) 자영업, 자유업 등
 - ① 국민건강보험
 - ② 국민연금
 - ③ 노인보건

2.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가. 중앙행정기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사회보험제도가 각각 독립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그 관리운영체계 또한 상당히 복잡하다(표 3 참조).

의료보험 및 연금에 관한 중앙행정기구는 그 대부분이 「후생성」 소관이며 고용보험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노동성」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은 「대장성」, 지방공무원공제조합은 「자치성」, 농림어업단체직원 공제조합은 「농림수산성」,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은 「문부성」이 담당하고 있다.

「후생성」은 1961년 뺄연금, 뺄보험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1962년 기구

개혁을 통하여 사업의 관리운영부분과 제도의 기획·입안부분을 분리하여 사업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外局으로 「사회보험청」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후생성의 「보험국」과 「연금국」은 각종 사회보험의 기획·입안, 조정, 조사연구, 그리고 건강보험조합, 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등의 지도감독 외에 사회보험, 의료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고, 「사회보험청」은 총무부, 운영부 및 사회보험업무센터가 있어 정부관장 건강보험사업, 선원보험사업, 국민연금사업, 후생연금보험사업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성」이 담당하고 있는데 노재보험은 「노동기준국」의 「노재관리과」와 「보상과」 등에서, 고용보험은 「직업안정국」의 「고용보험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노동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大臣官房의 「노동보험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 지방행정기구

사회보험행정의 지방행정기구는 대부분이 정부관장의 사회보험 실시의 창구가 되고 있으며, 일부는 감독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都道府縣의 「民生主管部局」에는 「보험과」와 「국민연금과」가 있는데, 「보험과」는 정부관장건강보험, 선원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의 사업의 관리사무와 그리고 건강보험조합, 후생연금기금 및 보험의료기관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과」는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사무와 동 사업에 대해 市町村을 지도감독하는 사무 및 복지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노동보험의 경우는 都道府縣 「勞動主管部局」에 「고용보험과」가 있어 고용보험사무의 관리사무 및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재보험의 사무는 都道府縣 「勞動基準局」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험과 연금의 하부 실시기관으로 피보험자의 적용,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부의 지급 등을 행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307개의 「사회보험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적용 및 지불에 관한 사무는 전국 478개의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노재보험은 전국 347개의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사업은 국가의 책무로서 실시되는 제도로 전국적인 규모로 획일적인 관리운영을 필요로 하는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 직원은 都道府縣의 조직에 속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모두 국가공무원이며 사업운영의 책임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있다(표 3, 표 4 참조).

다. 기 타

1) 자문기관

이러한 사회보험이 제정되고 실시되는 과정에는 많은 자문기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과 관련한 자문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생대신 또는 사회보험청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후생성에 「의료보험복지심의회」와 「연금심의회」가 있다. 「연금심의회」는 종래 후생연금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해온 「사회보험심의회」, 「후생연금부보험부회」와 국민연금사업의 운영을 심의해 온 「국민연금심의회」를 통합하여 1985년 7월에 설립되었다. 「의료보험복지심의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에 의해 「의료보험심의회」와 「노인보건복지심의회」를 통합·개조하여 1997년 9월 창설되었다.

또한 후생성에는 사회보험 진료보수에 대해 심의하는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있고 각 都道府縣에는 보험의료기관 및 보험약국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 심의하는 「지방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있다.

한편 노동성에는 고용보험사업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사업의 운영에 대해 심의하는 「중앙직업안정심의회」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의회」가 있다.

이 외에 사회보험 전반의 기획, 입법, 운영 등에 대해 심의하는 내각총리대신의 소관하에 있는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총리부에 설치되어 있다.

2) 불복심사기관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급부 등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기관으로서 심사관제도를 두고 있는데, 都道府縣 보험주관과와 국민연금주관과에는 「사회보험심사관」이 있고, 都道府縣 고용보험주관과에는 「고용보험심사관」, 노동기준국에는 「노재보상보험심사관」을 두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에 불복한 경우 상급심사기관으로서 후생성에 「사회보험심사회」가 있고, 고용보험심사관과 노재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사기관으로서 노동성에 「노동보험심사회」를 두고 있다.

3) 사회보험위원제도 등

사회보험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어려우며, 따라서 행정기관 외에 각종 민간단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 중 「사회보험위원제도」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종업원 10인 이상의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의 적용사업소, 선박소유자의 사업소의 책임자를 사회보험위원으로 都道府縣의 지사가 위촉하고, 그 사업소의 사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험에 관한 지도, 상담, 사회보험사무소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사회보험사무소에는 「사회보험상담원」을 두어 10인 미만의 사업소에 대해 이를 순회하면서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지도상담에 응하거나 사회보험사무소의 창구로 내방하는 피보험자와 보험급부의 수급권자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4) 사회보험의 업무처리체제

사회보험청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중핵인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대부분의 운영을 관할하고 있는데, 증대하는 업무량에 대처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전국의 사회보험사무소와 사회보험청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사회보험 온라인화의 계획을 책정, 197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였고 1989년 2월 온라인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이에 의해

(농림어업단체직원)

- ②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법 -- 농림수산성(경제국) -----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
- ① ③ ④ - A, C, D.

[지역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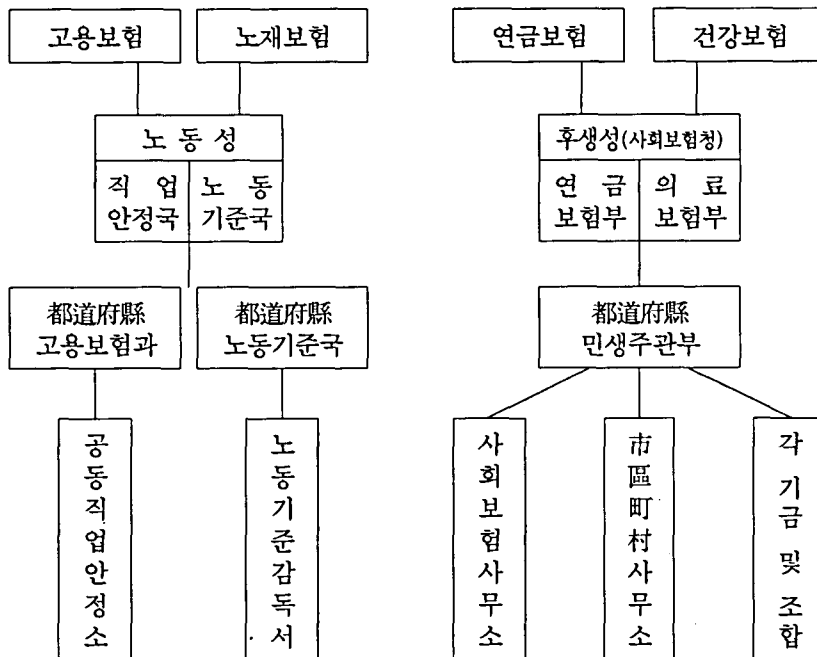
- ① 국민건강보험법---후생성(보험국) ----- 都道府縣(민생주관부)-- 市區町村
- ② 국민연금법 --- 후생성(연금국)----사회보험청---都道府縣(민생주관부)--사회보험사무소
(정부, 기금) 국민연금기금
- ③ 농업자연금기금법 -- 농림수산성(구조개선국) ----- 농업자연금기금

(노인의료)

노인보건법 -- 후생성(노인보건복지국) ---- 都道府縣(노인보건부관부) ---- 市區町村

- 주: 1)제도 : ① 의료보험, ② 연금보험, ③ 고용보험, ④ 노재보험
- 2)법률 : A 건강보험법, B 국민연금법, C 고용보험법, D 노재보험법

<표 4> 각 사회보험의 관할 및 청구



- 사회보험사무소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사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전국 307개가 있으며, 관할에 따른 창구업무를 한다. 관할은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사업소의 소재지에 의해 결정되며, 각종 신청서, 연락, 홍보, 청구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 市區町村

국민건강보험의 사무와 건강보험(일고특례피보험자)의 경우 사회보험청 장관이 지정한 市町村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일고특례피보험자에 대해 사무의 일부를 행한다. 이 경우 관할은 사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피보험자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된다.

- 공공직업안정소

전국 478개가 있으며, 고용보험의 창구업무를 행한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적용사업소의 소재지에 의해 결정되며, 보험금의 급부나 일용노동자의 급부에 대한 사무의 관할은 그 개인의 주소에 의해 결정된다. 고용보험의 적용, 자격상실 등의 사무를 취급한다.

- 노동기준감독서

전국 347개의 노동기준감독서에서 노재보험의 창구사무를 맡는다. 관할은 사업소의 소재지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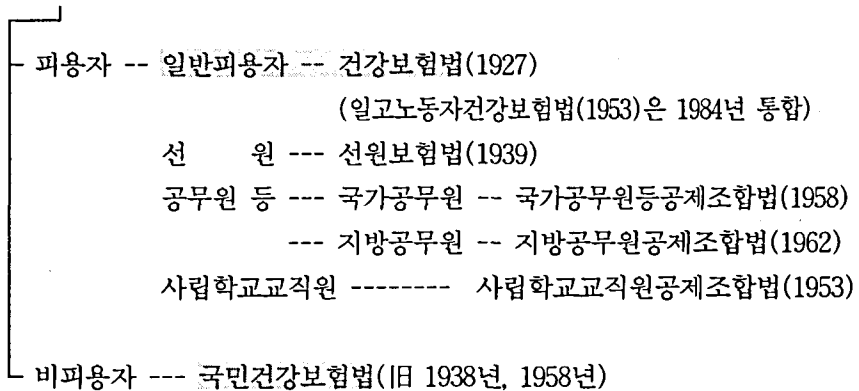
Ⅲ. 社會保險의 內容과 管理體系

1. 의료보험제도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피용자보험인 「건강보험」과 지역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중심이며, 이 외에 특수직의 보험으로 「선원보험」 및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공제조합의 단기급부가 있으며, <표 5>와 같이 각각의 법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

<표 5> 의료보험제도의 종류

의료보험제도



현재 의료보험은 보험재정의 위기에 직면하여 일련의 개혁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보장 구조개혁의 하나로 근본적인 개혁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보험의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건강보험

1927년에 시행된 일본 최초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는 피용자 의료 보험제도의 중핵으로 업무 이외의 사유에 의한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에 관해 보험급부를 하고 아울러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에 관한 보험급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보험자

정부를 보험자로 하는 「정부관장건강보험(政管健保)」과 건강보험조합을 보험자로 하는 「조합관장건강보험(組合健保)」으로 대별된다.

건강보험조합은 단독으로 상시 70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소 및 동 업종의 복수사업소, 또는 일정지역 내의 다른 업종의 복수사업소에서 3,00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 후생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조합관장 이외의 피보험자의 건강보험을 관장하며 주로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피보험자수는 정부관장이 1,973만명, 조합관장이 1,539만명이다 (1997년 9월).

2) 피보험자

① 강제피보험자, ② 임의포괄피보험자, ③ 임의계속피보험자, ④ 건강보험법 제69조 7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일고노동자, 계절노동자 등) ⑤ 특례퇴직피보험자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강제피보험자는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법인의 사업소에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3) 보험급부

- 傷病급부

- 요양급부(요양에 필요한 비용의 20% 및 약제에 대한 일부 자기부담이 있고, 기간제한은 없음), 입원시 식사요양비, 방문간호요양비,

특정요양비·요양비·고액요양비, 이송비, 상병수당금

- 출산급부 : 출산육아일시금, 출산수당금
- 사망급부 : 장제비

4) 재원 : 보험료와 국고부담

- 정부관장 건강보험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 : 8.5%(노사 절반, 각 4.25%)

국 고 : 급부비의 13.0%(노인보전 각출금의 16.4%)

- 조합관장 건강보험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 : 3.0%에서 9.5%범위에서 조합이 결정

(노사 절반, 평균 8.34%)

국 고 : 사무비전액, 급부비 보조(60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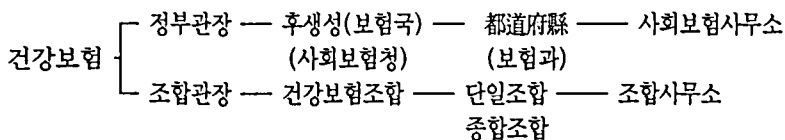
5) 표준보수

제1급(9만 2,000엔)에서 제40급(98만엔)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정한다.

6) 행정기구

정부관장 건강보험은 각 都道府縣의 보험과에 속한 「사회보험사무소」가 보험의 창구가 되고 있으며, 조합관장은 「조합사무소」가 창구가 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법 제69조 7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특례(일고노동자 등)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정부이며, 사무의 일부는 都道府縣 지사 및 市町村長이 행한다.



특별요양비, 이송비, 고액요양비

- 출산급부 : 출산육아일시금
- 사망급부 : 장제급부, 장제비

4) 재 원

보험료, 국고보조금, 都道府縣 보조금, 市町村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산업금 등이며 보험료와 국고보조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료(稅) : 市町村은 세대주로부터, 조합은 조합원에게 보험료를 징수한다. 市町村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보험료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례를 규정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제도가 있다. 보험세를 채용하고 있는 市町村의 수가 91%를 점하고 있는데 비해 피보험자수는 58%이며, 이는 대도시인 경우 보험료를 많이 채용하고 있으며, 조합의 경우는 모두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부의무자는 세대주이며, 보험료는 해당세대의 각 피보험자에 대해 산정한 소득비례액, 자산비례액, 피보험자수에 대응한 피보험자 균등비례액, 세대별평균 균등비액 등을 기초로 한 금액(1997년도 53만엔)이다.

국고부담(보조) :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저소득층이 많고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이 없는 관계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고액의 국고부담 및 보조가 있으며(요양급부비등부담금, 보험기반안정부담금, 재정조정교부금, 사무비부담금,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등보조금, 지도감사위탁비, 국민건강보험특별대책비보조금 등) 1997년도 예산은 약 3조 359억엔이다.

5) 행정기구

후생성(보험국) -- 都道府縣(민생주관부) -- 市區町村

국민건강보험조합

6) 진료보수지불기관

각종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요양급부로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 비용을 다수의 의료기관이 각 보험자에 대해 각각 청구하지 않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불사무를 일괄하여 행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인 「사회보험 진료보수지불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각 都道府縣에 지부를 두어 의료기관의 청구에 대한 내용심사와 의료비의 지불을 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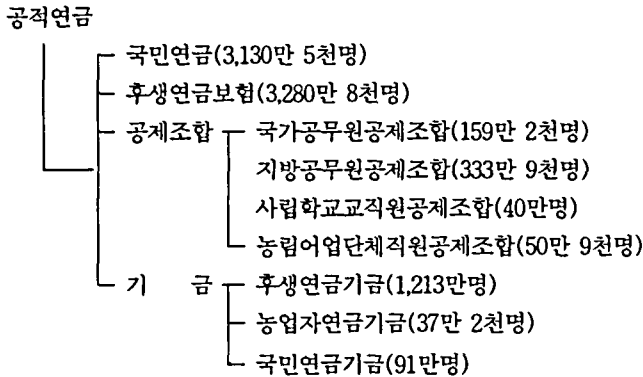
사회보험의 의료비는 통상 「사회보험 진료보수지불기금」을 통해 지불되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각 都道府縣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 진료보수지불기금」은 노인보전제도 및 퇴직자의료제도와 관련한 각출금의 징수 및 교부의 사무도 하고 있다.

2. 공적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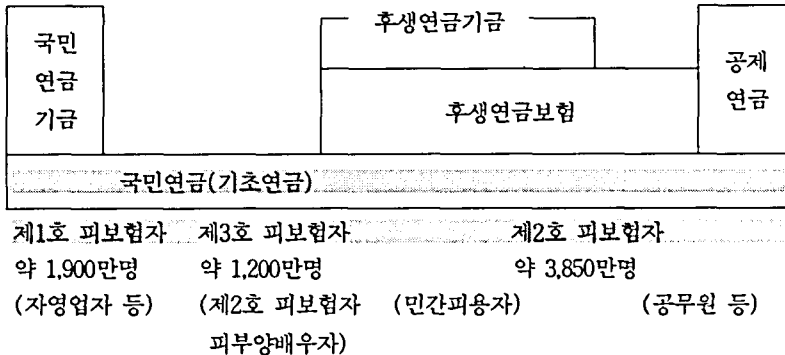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1941년에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연금보험법」(1944년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이 탄생되었고, 1959년에는 자영업자 등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어 전국민대상의 쌓연금체계가 실현되었다. 경제성장과 아울러 연금제도는 그 내용과 수준이 크게 개선되면서 발전되었고 현재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연금재정이 점차 악화되었으며, 안정적인 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일련의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1986년에는 연금구조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났는데, 국민연금과 피용자연금인 후생연금 등의 기초부분을 통합하여 국민연금을 전국민의 공통적인 기초연금으로 개정하였다. 현재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세대간의 급부와 부담의 균형이란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보장 개혁의 일환으로 연금의 구조개혁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을 앞두고 있는 현재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표 6>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 그리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 등이 있다.

<표 6>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표 7>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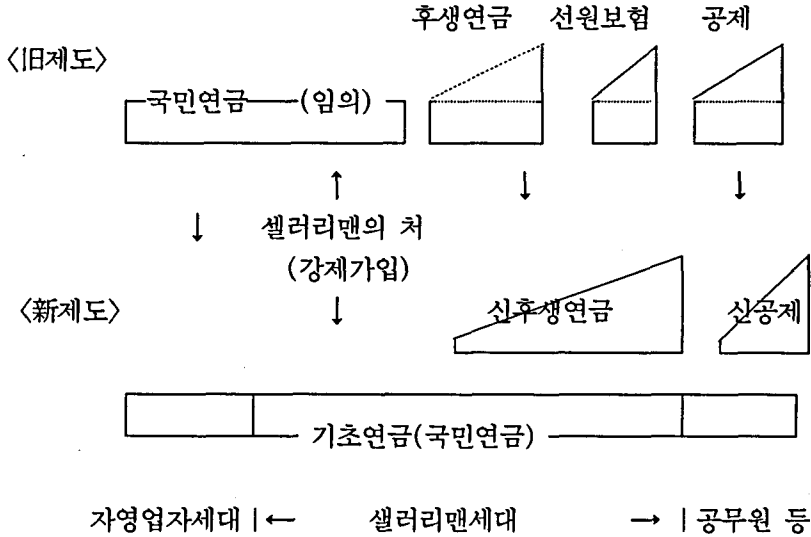


가. 국민연금(국민연금법, 1961년 실시)

국민연금제도는 자영업자 등 피용자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1959년 제정되어 1961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1986년 기초연금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개정에 의해 국민연금은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

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정되었다(표 8 참조).

〈표 8〉 1986년 공적연금제도의 대개편



국민연금제도는 각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제도발족시에 이미 일정한 연령에 달한 자에게는 전액 국고부담에 의한 무각출의 「노령복지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20세 이전의 병상에 의해 장애상태에 있는 자에게도 무각출에 의한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1) 보험자

정부(후생성)가 관장한다.

2) 대 상

- 제1호 피보험자 :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 제2호 피보험자 :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및 공제조합의 조합원
- 제3호 피보험자 :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 조합원의 피부양 배우자로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자

적용제외인 피용자연금제도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나 재외국민도 임의가입할 수 있다.

3) 연금급부

국민연금의 급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및 유족기초연금과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한 독자적인 급부로 부가연금, 과부연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다. 1995년 4월부터 단기체류의 외국인에 대해 탈퇴일시금이 지급되고 있다.

● 노령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기간과 보험료 면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자에게 65세부터 지급하며, 부가보험료 납부자에게는 부가연금이 지급된다.

$$\text{기초연금액} = \frac{785,500\text{円} \times \text{보험료납부제월수} + \text{보험료면제월수} \times 1/3}{480}$$

무각출연금인 노령복지연금은 1961년 4월 현재 50세를 넘은 자가 70세에 달할 경우에 지급되며, 연금액은 월 3만 3,533엔(1997년)이다.

4) 재원 : 보험료와 국고부담

● 보험료

보험료는 정액제이며 제1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기간에 기초가 되는 각 월에 대해 징수하며 제2호, 제3호 피보험자의 경우는 속해 있는 피용자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각출금의 형태로서 부담한다.

-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 일반보험료 월액 13,300엔(1998년 4월부터)
- 부가보험료 월액 400엔

또한 생활보호자 등 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다.

- 국고부담

기초연금 급부비의 3분의 1, 보험료 면제기간에 해당하는 노령기초연금 급부에 필요한 비용과 부가연금 급부비의 4분의 1, 사무비전액을 부담한다.

5) 보험료의 수납

보험료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수첩」에 국민연금 인지를 붙이고 이에 市區町村 長 또는 都道府縣 지사의 검인을 받으며, 각 월의 보험료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인지에 의한 납부방법의 예외규정으로 피보험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市區町村에 지불하고, 市區町村 長이 보험료에 상당하는 인지를 특별검인에 붙여 이에 검인하는 방법에 의해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정확한 파악과 보험료의 확실한 수납체제가 필수적인데, 특히 도시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이동이 많고 제도에의 관심이 적은 젊은 층이 많아 검인율이 낮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市町村에서는 안정된 보험료의 수납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의 추진과 납부조직의 육성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마을에서는 납부조직의 형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인회 등의 자치조직, 납세조합 등 기존의 단체를 이용한 것이 많으며, 이러한 조직형태의 수는 20만개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서의 직접송부, 市町村 직원 및 전임 징수원의 개별방문 등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계좌이체는 전피보험자의 약 55%가 되고 있다.

6) 행정체계

후생성(연금국) - 사회보험청 - 都道府縣(민생주관부) - 사회보험사무소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제도

1991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996년도 말 현재 72개의 기금이 설립되어 있다. 이 제도는 정액의 기초연금제도만이 있던 자영업자 등에게도 샐러리맨과 같은 후생연금, 즉 기초연금 위에 부가하는 2단계 연금을 받아 노후의 소득보장의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노령기초연금에 부가하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금에는 일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각 都道府縣마다 설립할 수 있는 「지역형 국민연금기금」과 동종의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조직하는 「직능형 국민연금기금」이 있다.

기금에의 가입은 임의이며, 대상은 20세부터 60세미만의 국민연금의 제1호 피보험자로 보험료 면제자 및 농업인 연금기금제도의 피보험자는 제외된다.

급부의 종류는 기본급부 및 보너스 급부가 있으며, 65세부터 지급되고, 보험료 및 연금에는 세제혜택이 있다.

나. 후생연금보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은 1941년 「노동자연금보험」으로 발족되었고 1944년 「후생연금보험」으로 개칭되어 공적연금의 중심이 되어 왔다.

1986년의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전국민의 공통의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후생연금보험은 기초연금에 부가하는 보수비례부분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었다.

1) 보험자

정부(후생성)가 관장하지만 후생연금기금 가입자의 경우 기금이 대행하는 부분과 기금독자의 급부에 대해서는 후생연금기금이 보험자이다.

2) 대 상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소 및 상시종업원을 사용하는 법인의 사업소에서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자이다.

3) 연금급부

● 노령후생연금(보수비례연금)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65세부터 지급

연금액 = 평균표준보수월액 × (10/1000 - 7.5/1000) × 피보험자기간의 월수
× 슬라이드율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가급연금이 있으며 60세부터 수급가능한 특별지급제도가 있다.

- 장해후생연금, 장해수당금

- 유족후생연금

- 완전자동 물가슬라이드제의 채용: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가 변동한 경우 익년 4월부터 그 변동률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연금액이 개정된다.

4) 재 원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수입 등에 의한다.

- 보험료: 표준보수의 17.35%(1997년 현재, 노사 절반), 광부와 선원의 경우 19.15%, 특별보험료 1.0%(상여금 등)
- 표준보수: 보험료와 보험급부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수는 최저 9만 2천엔에서 최고 59만엔까지 30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5) 행정체계

후생성(연금국) -- 사회보험청 -- 都道府縣(민생주관부)-사회보험사무소
후생연금기금

- 보험의 청구

후생연금보험의 청구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각 지구에 있는 「사회보험사무소」이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적용, 징수, 급부 등 모든 처리를 하지만 후생연금보험의 경우는 적용과 징수관계의 사무를 행한다.

그 중 적용관계는 사회보험청 사회보험업무센터에 보고하며, 급부의 경우는 모든 급부서류를 접수받고 탈퇴수당금을 제외한 서류를 사회보험청의 사회보험업무센터에 송부하며, 사회보험청이 보험급부의 지급을 행한다.

사회보험사무소가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을 취급함으로써 보험의 성격은 달라도 실무면에서 공통하는 부분이 많아 사무수속 등은 하나의 양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즉 자격취득의 경우, 1매의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청서」를 그 회사를 관할하는 사회보험사무소에 피부양자에 관한 서류 등의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동시에 2개의 보험이 처리된다. 제출기한은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이며, 사회보험사무소는 자격취득신청서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확인 및 표준보수결정통지서」와 「건강보험피보험자증」 및 「연금수첩」을 교부한다.

- 후생연금기금

1965년 후생연금보험법 개정에 의해 창설된 제도(일명 조정연금)로 후생연금기금은 후생대신의 인가하에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공적인 후생연금보험의 노령후생연금의 일부를 기업연금이 대행하는 제도이다. 기금은 500인 이상의 기업에서 노사의 합의에 의해 설립되며, 노사의 대표에 의해 운영된다.

이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업연금의 역할을 중시하고 기업연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금에 가입한 사업주는 대행되는 후생연금의 해당하는 보험료가 면제되며, 기금은 연금급부로 후생연금의 대행부분과 기금독자의 부가급부를 지불하여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1997년 4월 현재 1,888기금, 종업원 약 1,257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3. 노동자재해보상보험제도(노재보험)

1947년에 제정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업무재해 및 통근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로 재해에 관한 보험 급부를 행하고 피해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유족의 보호, 적절한 노동조건외 확보 등 노동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등 특수직의 경우는 선원보험, 국가공무원재해보상, 지방공무원 재해보상,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에서 다루고 있다.

가. 보험자

정부(노동성)가 관장한다.

나. 대 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소에 적용되며 노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한 날에 당연히 성립하며(당연적용사업), 농업, 임업, 수산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일부는 당분간 임의적용으로 하였다(잠정임의적용사업). 또한 중소기업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등의 노동자 이외의 자나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에 대해서 특별가입제도를 두고 있다(특별가입). 1996년 말 사업장수는 268만 4,588개, 노동자수는 4,790만명이다.

다. 보험금부

업무재해에 관한 급부와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가 있다.

급부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연금, 일시금등), 유족보상(연금, 일시금등), 개호보상, 상병보상급부, 장제료 등이 있다. 「요양보상급부」는 업무상의 상병을 치료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노동자가 노재병원, 노재지정병원 등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현물급부인 요양급여가 제공되며, 지정병원 등 이외의 경우에 그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상환하는 현금급부인 요양비의 지급이 있다. 「휴업보상급부」는 휴업 4일째부터 원칙적으로 급부기초일액의 60%의 휴업보상급부가 지급된다.

휴업보상급부는 임금수준이 10% 이상 변동한 경우, 또한 연금 및 일시금급부는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매년 변동률에 대응하여 급부기초일액의 개정이 일어나는 슬라이드제가 채용되고 있다.

라. 재 원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실시되며 약간의 국고보조가 있다.

- 사용자보험료 : 노동자의 임금총액에 勞災보험률(업종별로 0.6~14.4% 까지 범위에서 30단계가 설정)을 곱하여 산출한다.
- 국고부담 : 예산범위에서 일부비용 보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마다 재해율에 대응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험률 또는 보험료액을 증감시키는 메리트제도가 있다.

보험료는 「노동보험 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보험료와 함께 노동보험의 보험료로 일원적으로 징수되고 있다.

마. 행정체계

노동성(노동기준국) - 都道府縣(노동기준국) - 노동기준감독서

4. 고용보험제도

1947년 대량실업을 배경으로 성립한 일본의 실업보험제도는 1975년 실업예방에 중점을 두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입장에서 고용보험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이외에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의 3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 보험자

정부(노동성)가 관장한다.

나. 대 상

적용사업은 노동자가 고용된 전사업에 적용하며 단지 농림수산업, 개인사업으로 5인 미만의 사업소는 당분간 임의적용으로 하였다.

피보험자는 고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4종류로 구분된다.

- ① 일반피보험자
- ② 고연령 계속피보험자 : 동일사업주의 적용사업에 65세에 달한 날의 전일부터 계속하여 고용된 자
- ③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자 또는 단기고용(동일사업주에 계속하여 피보험자로 고용되는 기간이 1년 미만)에 있는 자
- ④ 일고노동피보험자 : 매일 고용되는 자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피보험자가 된 일용직 근로자

다. 금 부

- 금부종류 : 실업금부에는 구직자금부, 취직촉진금부, 고용계속금부(고

연령고용계속급부, 육아휴업급부)가 있다.

- 실업급부의 수급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 이직일 이전 1년간(그동안 질병, 부상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 최장 4년)에 피보험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이직후 「공공직업안정소」에 출두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본수당의 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전 6개월의 임금총액을 180으로 나눈 금액(임금일액)의 8할에서 6할이다.

라. 재 원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금으로 운영되며, 보험료의 징수는 노재보험료와 함께 노동보험료로서 징수된다.

- 보험료 : 임금총액의 1.15%(본인 0.4% 사용자 0.75%)
농림수산업 등은 1.35%, 건설업은 1.45%

〈표 9〉 보험료부담 비율

(단위 : %)

	사업주부담	노동자부담	전 체
실업급부를 위한 보험료	0.4	0.4	0.8
3사업을 위한 보험료	0.35	無	0.35
전 체	0.75	0.4	1.15

국고부담 : 구직자급부비의 4분의 1(일고노동자의 경우는 급부비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고용계속급부의 경우는 비용의 8분의 1을 부담한다.

마. 행정체계

노동성(직업안정국) - 都道府縣(노동주관부) - 공공직업안정소

● 노동보험의 적용과 징수

1960년대 이후 노재보험과 실업보험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막대한 사무량의 증가로 행정능력이 저하되었고 사무담당직원의 노동강화를 초래 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새롭게 적용된 영세사업장의 경우 과중한 사무부담 을 주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노동보험의 전면적용을 계기로 1972년 징수법 「노동보험의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법률(일명 징수법)」을 제정하여 종래부터 지적되어 온 노재보험과 실업보험의 이원적용의 불합리 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였고, 노동보험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이 법은 노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양 노동보험제도의 보험료 징수사무를 일원화한 것으로 노동보험의 보험관계, 노동보험료의 신고납부수속, 노동 보험사무조합 등에 대해 포괄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험의 적용

보험료 징수사업의 전제가 되는 적용사업은 각 적용사업마다 원칙적으로 양 보험이 하나로 된 노동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일원적으로 처리한다(일원적용사업).

단지, 都道府縣 및 市町村이 행하는 사업 기타 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업(都道府縣 및 市町村에 준하는 곳에서 행하는 사업, 6대항의 항만운송 사업, 농림수산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노재, 고용의 양 보험에 있어 적용노동자의 범위, 적용방법의 차이 등으로 일원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양 보험의 보험관계별로 개별사업으로 보아 이원적으로 적용한다(이원적용사업).

2) 노동보험의 보험료

가) 보험료의 종류

정부는 노동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노동보험료를 징수하며, 그 종류는 5개로 구분한다.

① 일반보험료 :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불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

한 통상의 보험료로 임금총액에 일반보험료에 관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다(양 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은 노재보험률과 고용보험률을 더한 율).

- ② 제1종 특별가입보험료 : 노재보험의 중소기업주 등의 특별가입자의 보험료
- ③ 제2종 특별가입보험료 : 노재보험의 자영자(가족종사자 등) 특별가입자의 보험료
- ④ 제3종 특별가입보험료 : 노재보험의 해외파견 특별가입자의 보험료
- ⑤ 인지보험료 : 고용보험의 일고노동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인지에 의한 보험료

나) 보험료의 신고 및 징수

원칙적으로 양 보험의 보험료를 하나의 노동보험료로 징수하기 위해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속사업」¹⁾에 있어서는 매 보험연도 초에 그 사업으로 1년간에 지불되는 임금총액의 예상액(통상의 경우 전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원칙으로서 양 보험의 보험료율을 더한 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개산보험료로서 징수하고 翌보험년도 초에 해당 보험연도에 있어 실제 지불되는 임금총액에 근거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과부족을 청산한다.

「有期사업」²⁾에 있어서는 사업시작시에 그 사업의 전기간 임금총액의 예상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개산보험료로서 징수하여 해당 사업이 종료한 때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과부족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개산보험료는 일정의 요건하에 분할납부가 인정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일고노동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상기의 보험료(일반보험료) 외에 일정액의 인지보험료를 징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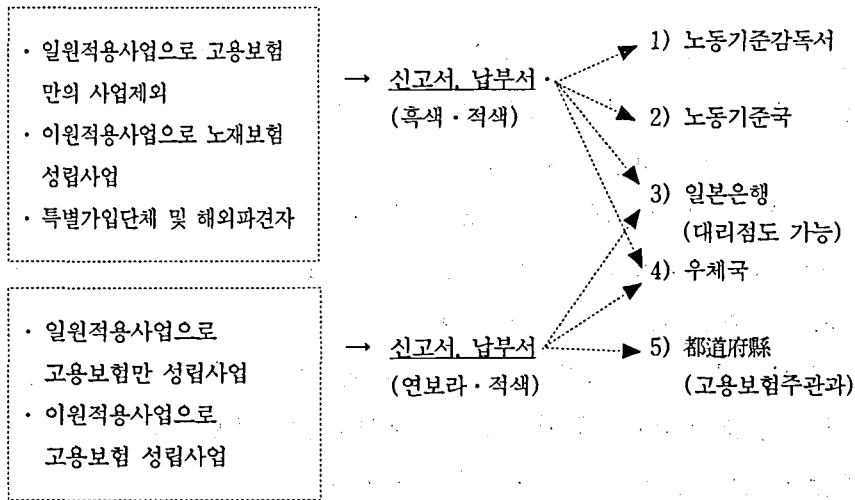
납부수속은 전년도부터 계속 노동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

1) 사업기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의미하며, 일반공장, 상점, 사업소 등을 말한다.

2) 사업기간이 예정된 사업, 즉 건축공사, 댐공사, 도로공사 등 건설사업, 임업사업 등을 말한다.

업은 매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산보험료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하여 보험료신고서와 납부서에 개산보험료를 첨부하여 일본은행, 우체국, 관할의 都道府縣 노동기준국, 노동기준감독서 또는 관할 都道府縣 고용보험주관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표 10 참조).

〈표 10〉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의 절차



3) 노동보험사무조합

「노동보험사무조합」은 노동보험료의 납부, 기타 노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주를 대신하여 처리함으로써 보험사무의 원활하고 적절한 보험사무처리를 도모한 제도이다. 즉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 또는 연합체는 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아 「노동보험사무조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주 등의 위탁을 받아 노동보험료 납부 등의 노동보험 사무를 처리한다.

보험료의 납부를 주요 사무로 하지만 사업주의 위탁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등 징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정부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단순한 대리인 이상의 책임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험료의 납부상황이 우수한 노동보험사무조합에는 장려금이 교부된다.

4) 노동보험의 사무 및 징수기구

중앙에 있어서는 노동성의 大臣官房에서 노동보험의 적용징수사무를 관리하고 지방에는 지방의 행정조직(都道府縣 노동기준국과 노동기준감독서의 계열 및 都道府縣(노동주관부)과 공공직업안정소의 계열)을 적용징수기구로서 활용하고 해당사무를 관할하도록 하였다(표 11, 표 12 참조).

지방에 있어서의 노동보험 적용징수사무의 관할내용은 다음의 원칙에 의해 취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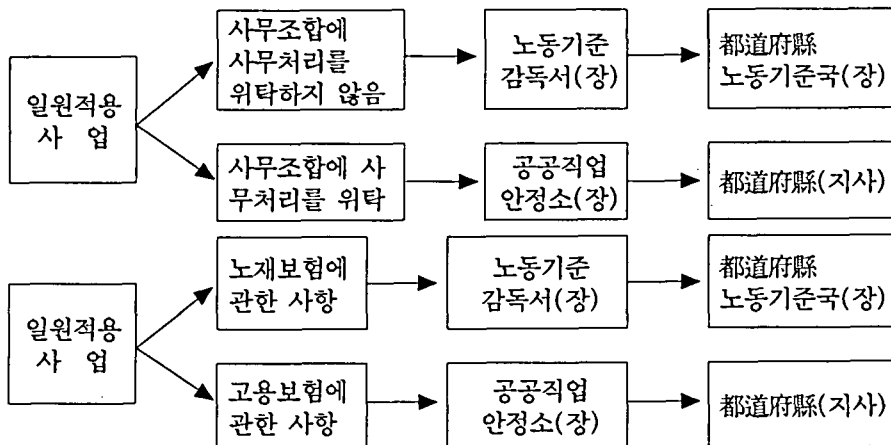
①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노동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보험료 징수 등의 사무는 都道府縣이 관할하고, 그 이외의 사업에 관한 보험료의 징수 등의 사무는 都道府縣 노동기준국이 관할한다.

단지 이원적용사업에 대해서는 노동보험사무조합에의 노동보험사무처리의 위탁과 관계없이 노재보험분에 대해서는 都道府縣 노동기준국이, 고용보험분에 대해서는 都道府縣이 각각 관할한다.

② 노동보험사무조합 인가 등의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都道府縣이 관할하고, 都道府縣 노동기준국은 노재보험만에 관한 일부의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인가 등의 사무만을 관할한다.

③ 노재보험과 고용보험 각각의 특유한 사무에 대해서는 都道府縣 노동기준국과 都道府縣이 관할하며, 구체적으로는 <표 12>와 같다.

<표 11> 노동보험사무의 관할구분



〈표 12〉 노동보험 행정의 사무분담

都道府縣 노동기준국	都道府縣(노동주관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원적용사업으로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사무처리를 위탁하지 않은 사업(개별가입사업)에 관한 일반보험료의 징수 2. 이원적용사업 중 노재보험분의 일반보험료의 징수 3.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있어 사업주로부터 처리가 위탁된 노동보험사무가 노재보험에 관한 보험관계만이 성립한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한 인가 4. 노재보험의 특별가입의 승인 이에 관한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보험가입보험료의 징수 5. 노재보험의 특별보험료의 징수 6. 징수법 시행전의 기간에 관한 旧 노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7. 노재보험의 임의가입의 인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사무처리를 위탁한 일원적용사업에 관한 일반보험료 및 제1종 특별가입보험료의 징수 2. 일원적용사업으로 고용보험에 관한 보험관계만 성립한 개별가입사업에 대한 보험료의 징수 3. 이원적용사업 중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에 관한 사업 4.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인가(좌측 3에 해당하는 조합에 관한 것은 제외) 5. 고용보험의 특별보험료의 징수 6. 징수법 시행전의 기간에 관한 旧 실업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7.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의 인가 8. 인지보험료의 징수 등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都道府縣 노동기준국의 사무에 관련한 신청서 등의 수리 2. 都道府縣 노동기준국이 관장하는 보험료 등의 징수금에 관한 보험료 신고 등의 수리 및 수납 3. 노동보험의 적용, 징수에 관한 사업주등의 지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都道府縣 사무에 관한 신청서 등의 수리 2. 고용보험인지관계사무, 일고노동자의 고용보험 사무 3. 노동보험의 적용, 징수에 관한 사업주 등의 지도

IV. 社會保險의 改革動向

현재 일본정부는 경제·사회적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을 창조하기 위해 행정, 재정, 사회보장, 경제, 금융시스템, 교육의 「6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보험과 관련한 개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개혁과 「노동복지성」

일본은 1996년 11월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한 「행정개혁회의」를 설치하여 中央省廳의 재편 등을 검토하였고 1998년 2월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2일 제142회 통상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이를 기본으로 행정조직의 개혁이 추진되게 되었다.³⁾

기본법의 방향대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성청개혁추진본부」는 1999년 4월을 목표로 「내각법」, 「국가행정조직법」, 「各省廳설치법」 등의 관계법률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신체제의 실시는 가능한 2001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법은 내각기능의 강화, 국가 행정기관의 재편성 및 행정조직 등의 감량, 효율화 등을 목표로 그 기본방침과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 법에 의하면, 현재의 「후생성」과 「노동성」이 통합되어 새로운 쉐인 「노동복지성(가칭)」이 설립되며, 주요한 임무로 고용의 확보, 노동조건 정비,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규정하였고, 정책실시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사회보험청」을 두도록 하였다. 노동복지성의 기능과 정책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법 제25조)

3) 中央省廳等改革基本法案(1998), 行政改革會議第45回議事概要

- ①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 추진
- ② 少子, 고령화 사회의 변화와 남녀공동참가 사회의 형성에 대응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통합 및 제휴의 강화
- ③ 사회복지, 보건, 고용 등에 있어 지역의 역할강화
- ④ 노동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조정에 관한 행정을 수정·축소
- ⑤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 추진
- ⑥ 少子, 고령화 사회에의 종합적 대응을 위한 관계省廳간의 조정기능 강화
- ⑦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에 관련한 징수사무의 일원화 도모
- ⑧ 복지서비스의 분야에서의 민간활력의 활용 및 이용자에 의한 선택의 확대를 도모
- ⑨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을 통해 수급조정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촉진
- ⑩ 약사행정, 공중위생행정, 식품위생행정 및 수도행정의 담당 등이다.

2. 재정구조 개혁과 사회보장

국가의 재정상황이 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1997년 11월 28일 「재정구조개혁법안(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2005년까지 국가 및 지방의 재정적자 대 GDP 比를 3% 이하로 하고 특별공채의 발행을 제로로 하는 등의 목표와 함께 3년간을 (1998~2000년) '집중개혁기간'으로 하여 각 부분의 세출에 대한 양적축소의 목표를 결정하였다.

재정구조 개혁에서 사회보장관계비에 관한 기본방침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여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르는 사회보장관계비의 증가액을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하였다. 즉 집중개혁기간의 사회보장관계

비의 양적인 감축목표를 보면, 1998년도의 예산은 1997년도의 예산에 3000억엔을 가산한 금액 이하로 하고, 1999년, 2000년도의 예산액은 약 102/1,000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의 비용이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크게 증가하여 2025년에는 216~274조엔으로 예상되고, 국민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의 부담이 29.5~35.5%(1995년에는 18.5%)로 크게 증가될 전망으로 장래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회보장의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과 의료부분(1995년도 사회보장급부비는 약 64.7조엔으로 연금 33.5조엔, 의료 24.1조엔(그 중 노인의료가 8.5조엔), 기타 7.2조엔임)의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료비의 경우 그 증가율을 국민소득의 증가율의 범위 내로 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였고 의료보수제도의 개선, 의료제공체제의 검토, 고령자의료제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개혁을 지적하였다.

연금보험의 경우도 안정적인 제도운동을 위해 급부와 부담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급부수준 및 형태, 보험료율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3. 사회보장의 구조개혁

행정, 재정 등의 개혁과 더불어 사회보장 분야에 있어서도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자녀출산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르는 사회보장에 필요한 비용의 큰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재정상황의 악화라는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1997년 9월에 후생성의 발표에 의하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둔 경우, 국민부담률⁴⁾은 현재의 20% 수준에서 약 50% 이상이 될 전망으로 고령화가 피크로 되는 2025년경의 국민부담률 50% 이하라는 목적하에 사

회보장에 비중이 큰 연금과 의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 개혁의 방향

① 제도의 횡단적인 재편성 등에 의한 전체의 효율화이다. 연금, 의료, 복지 등 각 분야의 제도가 종적인 구조를 가짐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망으로서 결함,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재편성하여 사회보장 전체로서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화를 도모한다.

②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이용자 본위의 구조를 중시한다.

특히 장애나 요보호상태가 되어도 가능한 한 살던 지역에서 자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개호를 비롯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체제의 정비에 노력하고 이용자 본위의 구조만들기를 노력한다.

③ 공사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민간활력의 도입을 촉진

④ 공평, 공정성의 확보

고령자 세대와 현역세대간의 균형, 자산을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은 자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급부와 부담의 공평, 공정을 확보한다.

● 개혁의 추진

이러한 방향하에 후생성에서는 고령자 개호, 의료, 연금 등의 각 분야에 있어 구체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고령자 개호부분에서는 국민의 노후에 있어 최대의 불안이 되고 있는 개호문제에 대응하여 그동안 논란을 계속해 오던 「개호보험법」이 1997년 12월에 성립하였고, 2000년도부터 실시되는 개호보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호서비스의 공급체계의 정비사업이 市町村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저성장의 경제기조 속에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4)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비율.

한편, 고령화 등의 진행으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관장건강보험은 1993년 이후 적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1996년도에는 약 4,000억엔의 적자를 보았고, 조합관장건강보험도 1994년도 이후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어 1996년도에는 적자가 2,000억엔으로 전조합의 약 7할에 해당하는 1,293조합이 적자가 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도 특히 저소득자가 많은 가운데 피보험자의 고령화가 진전되어 각 보험자의 재정은 매년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고, 1996년도에는 전체의 65.2%에 상당하는 市町村이 적자가 되었다.

이러한 의료보험재정의 악화는 의료비의 증가와 경제성장간의 불균형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후생성은 이러한 보험재정의 당면한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1997년 6월에는 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을 통해 피보험자 본인의 일부 부담비율을 1할에서 2할로 인상하고, 외래환자의 약제에 대한 일부 부담제 등을 도입하는 등 의료보험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앞으로 현재의 국민보험체제를 유지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제공체제 및 의료보험제도의 양면에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0년을 목표로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노령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연금재정의 안정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994년에는 후생연금의 지급연령을 65세로 인상하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재정안정을 위한 대개정이 일어났다. 또한 1996년 3월 공적연금제도의 재편성의 추진에 대한 각의결정이 있었고 제1단계로 1997년 4월부터 JR공제 등의 旧공공기업체의 공제조합이 후생연금보험에 통합되었다.

현재 일본은 예상을 넘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진전, 그리고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현재의 연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배 수준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으로 후생성은 1999년의 차기 財政再計算期를 목표로 장기적으로 안정한 연금제도의 수립을 위해 급부와 부담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연금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 다양화, 증대하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업,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의 기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参 考 文 献

- 健康保険組合聯合會, 『社會保障年鑑』, 1998.
- 厚生統計協會, 『1997年 保険と年金の動向』, 1998.
- 社會保險廳, 『98社會保險手帖』, 1998.
- 労働性, 『労働保険の手引』, 1995.
- 日本ライセンスセンタ, 『労働保険徴収法編』, 日本法令, 1997.
- 日本ライセンスセンタ, 『労働・社會保險の詳説』, 1994.
- 鶴岡徳吉, 『社會保險實務がわかる本』, 經營書院, 1998.
- 總理府社會保障制度審議會編, 『社會保障統計年報』, 平成9年版
- 全國社會保險勞務士會聯合會編, 『社會保險勞務六法』, 中央經濟史, 1996.
- 厚生省, 『厚生白書』, 1997, 1998.
- かの清, 『社會保險の實務』, 日本實務出版社, 1996.
- 全社協, 「社會保障構造改革の方向」, 『月刊福祉』, 1998. 1.
- 日本法令編, 『社會保險の實務』, 1996.
- 八田達夫編, 『社會保險改革』, 日本經濟新聞社, 1998.
- 大藏省, 「財政構造改革を考える」, 1998.
- 「中央省廳等改革基本法案」, 1998.
- 労働省關聯資料 1998.

● 이해영

-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졸업
- 일본 나고야대학 경제학 박사
- 現 수원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일본의 사회보험과 관리운영체계

1998년 12월 10일 인쇄
1998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인 박 炬 求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주 소 150-010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6-2 中小企業會館 9層
(代) (02) 782-0141

인 쇄 成紋印刷社
(代) (02) 272-7553

등록일자 1988년 9월 14일
등록번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